

법으로 규정되는

과수화상병 예방

농업인 준수사항

식물방역법 개정 시행(2024. 7. 24.) 적용 유예(2025. 1. 1.)



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

식물방역법 주요 개정사항

제33조의4(자료·정보 제공의 요청 등)

-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.

제33조의5(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)

- 농업인은 과수화상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연 1회(1시간 이상) 이수해야 합니다.
- 농업인은 작업도구 소독, 예방약제 살포, 건전묘목 구입,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농업인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를 지시해야 합니다.

예방수칙

- 농작업 전후 손, 작업복, 신발, 모자, 장갑 및 **작업도구 철저히 소독**
-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등록된 **농약을 살포**
(개화 전 1회 + 개화기 2회)
- 종자의 생산·판매 이력이 기록·보관되는 묘목 구입
- 재배지 내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·조사하고
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
-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

화상병 신고전화
☎ 1833-8572

감액될 수 있어요! (1)

의심증상 발생 즉시
신고해 주세요!

1833-8572



→ 미신고 시 60% 감액

예찰조사, 분포조사에
협조해 주세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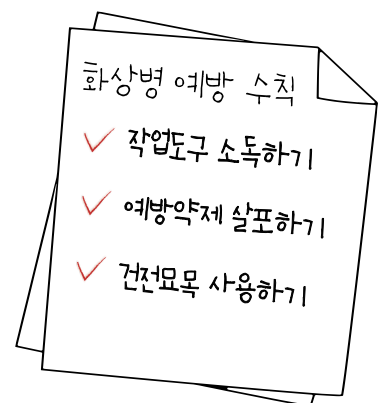
→ 거부 · 방해 · 회피 시 40% 감액

화상병 예방 교육을
이수해 주세요!



→ 미이수 시 20% 감액

예방 수칙을
준수해 주세요!



→ 미준수 시 10% 감액

감액될 수 있어요! (2)

농작업자들에게
예방 교육을 실시하고
예방 수칙 준수를
지시해 주세요!



→ 미실시 및 미지시 시 20% 감액

10년 이내* 동일과원 재발생 시

- 2회 20% 감액
- 3회 50% 감액
- 4회 이상 80% 감액

* 시행 이후 발생과원 적용

방제명령을 지켜 주세요!



방제대상 식물을 이동,
양도하면 안 돼요

→ 위반 시 100% 감액

방제대상 식물은
소독 후 폐기해야 해요



→ 위반 시 60% 감액



물품과 시설은 소독 후
사용하면 안 돼요

→ 위반 시 20% 감액

과수화상병은
예방만이 최선입니다

다 같이 노력해요!

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